

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('24. 7. 2.)에 따른 후속조치로, 경조사 휴가 및 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일을 변경하고 장기재직휴가 승인권자를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휴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개정(안 제9조 및 별표3)
 - 재직기간 : (당초) 2년 미만 → (변경) 5년 미만
 - 연가가산 : (당초) 2일 가산 → (변경) 3일 가산
-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휴가 개정(안 별표4, 제11조제1항 관련)
 - 경조사 일수 : (당초) 1일 → (변경) 3일
- 장기재직휴가 승인권자 개정(안 별표5, 제11조제3항 관련)
 - 승인권자 : (당초) 복무업무 총괄 부서장 → (변경) 소속 부서장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기준, 가산일 개정과 공무원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장기재직휴가 승인권자를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에서 소속 부서장으로 개정하여 휴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속직원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, 연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.